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7월 5일(일) 11:40	보스코홀
M.E.	7월 5일(일) 11:50	6교실
우리어머니 Cu.	7월 12일(일) 11:40	강당
사도들의 모후 Cu.	7월 12일(일) 11:40	식당

알림

- 오늘(7월 5일)은 베네수엘라 긴급구호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오늘(7월 5일)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 7월 10일(금)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
- 7월 15일(수) 11시 강당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7/12) 청소 담당 : 18구역

살레시오 새사제 미사 및 강복

- 일시 : 7월 5일(일), 교중미사(10시30분)
- 안수는 교중미사후 있을 예정입니다.
- 교중미사후 전신자에게 무료음식나눔 있습니다.

태중아기 축복식

- 매달 둘째주 교중미사 중
- 문의 : 본당 사무실 (02-857-8541)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6월)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5/2	반정석	플로리안	신수동
10/1	정호재	요셉	군중교구
22/3	예성민	미카엘	마산교구/사파동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2026 여름신앙학교 참가신청 안내

- 주제 : 우리를 꿈꾸게 하는 꿈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1,30)
- 3학년 ~ 6학년
 - 일시 : 7월 30일(목) ~ 8월 1일(토) / 2박 3일
 - 장소 :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살레랜드)
 - 참가비 : 120,000원(20명.선착순)
- 유치부 ~ 2학년
 - 일시 : 8월 1일(토) ~ 8월 2일(일)
 - 장소 : 구로3동성당(성당내 물놀이파크)
 - 참가비 : 25,000원
- 접수 : 6월 20일(토) 12:00부터 입금순서로!
- 문의 : 교감 최웅석 베드로(010-5473-9476)

우리들의 정성(6월 24일 ~ 6월 30일)

교무금	9,634,000원
주일헌금	현금 4,715,100원 신자엽 31,000원
2차헌금	1,976,500원
감사헌금	사두환10만원 신기자10만원 백승숙20만원 정영자 1만원 황정후 5만원 이형석 5만원 강성례10만원 심정순 5만원 임정은10만원 익명 20만원 최경진10만원 박홍민 5만원 이재숙 5만원 익명 5만원 이은용 4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7/5	백희자	장희석	이치헌 임종윤 송시영
7/12	구민서	임종윤	정재호 이치헌 정연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7/5	도현만	하재민	옥윤필 김용진
7/12	박용환	김영균	조홍환 도현만

성가번호 ♪ 입당 : 39 ♪ 예물준비 : 216, 210 ♪ 영성체 : 166, 165 ♪ 파견 : 77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3 편 사 목

제 3 장 특수사목

제 2 절 노동자사목

제 189 조 (노동조합)

1항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협 없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권에 속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0항 참조).

2항 신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참조).

제 190 조 (노사협력 관계)

1항 기업가와 노동자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화합을 이루면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이가 기업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참조).

2항 노동계약과 처우에 있어서 기업가와 노동자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기업에 대한 헌신의 관계로 규정되어야 하며 정의와 공평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사목헌장, 69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5항 참조).

제 3 절 교포사목

제 191 조 (개 념)

교포사목은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사도직활동을 말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4; 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3항 참조).

제 192 조 (교포교회의 역할)

1항 교포교회는 교포들이 특수 상황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여러 면으로 돕는다.

2항 교포교회는 교포들 중에서 특히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4항 참조).

제 193 조 (주교회의와 교포사목)

1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파견될 곳의 교구장의 청원에 따라 해당 교구장과 협의하여 교포사목 담당 사제를 선발하고 그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파견하고 지도 감독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6항 참조).

2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후원회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을 통하여 교포사목에 관심을 갖고 영적 물질 지원을 배려한다.